

의안번호	2210780
의 퇴 인	김영호 의원
회 답 일	2025.08.05.
추계번호	25C328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제5항)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따른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1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15조 (회의)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하 “중요안건”이라 한다)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무규정
		(제3항) 위원회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회부된 사항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무규정
		(제4항)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 중요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해당 안건을 다시 제16조에 따른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5항) 위원회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 다시 의결한 중요안건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배심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16조 (국민참여배심위원회)	(제2항) 배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논의한다. 1.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중요안건이 부결되어 배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청한 사항	의무규정
		(제3항) 배심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제출한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다수결의 방법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의무규정
		(제4항) 배심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배심위원회에 회부된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된 중요안건은 다시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3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5조 (회의)	
3	안 제16조 (국민참여배심위원회)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①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이하 “배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②위원회 소관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심의·의결 절차를 규정함

-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산하에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¹⁾ 국민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23년 4회, '24년 5회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참고자료]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현황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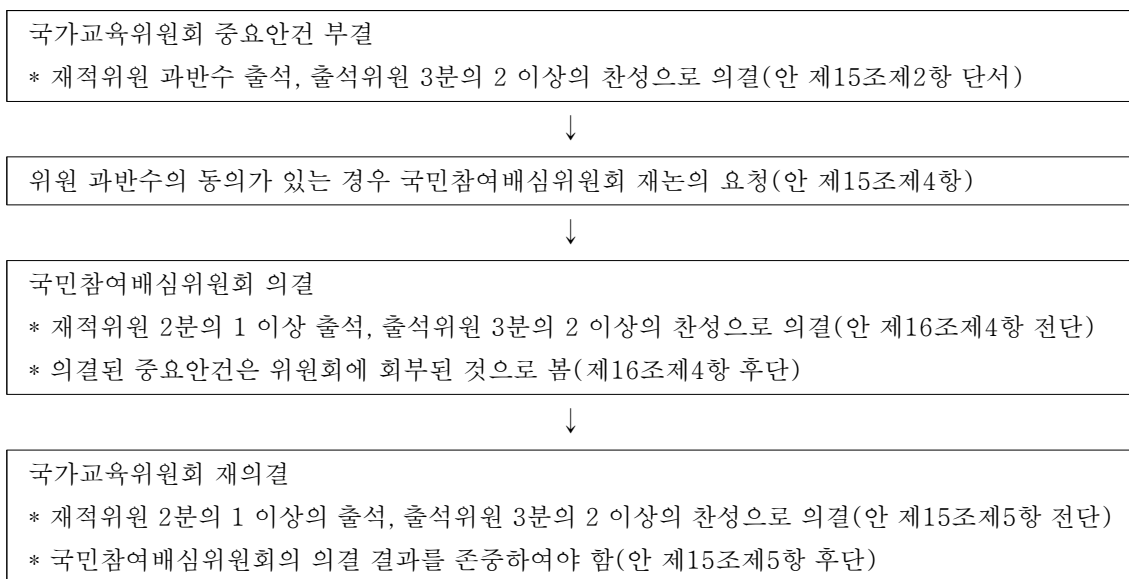
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의무적으로 배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
- 아울러 위원회의 소관 사무 일부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고, 해당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배심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재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르면 중요안건이란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말함

[표 1] 개정안에 따른 중요안건 재심의 절차



자료: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외에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키지 않아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변경되나, 위원의 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를 유발하지 않음
 - 한편, 개정안의 국민참여배심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²⁾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강화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나, 현시점에서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결정한 안건 및 중요안건에 대한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수반되는 비용임
 -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이루어질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참석 인원, 논의될 안건의 수 및 중요안건의 범위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2.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현황

년도	행사명	참석 인원(명)	지원예산(만원)
'23	발대식	228	318
	2023년 온라인 워크숍	296	—
	대입개편시안 토론회(4회 개최)	748	7,350
	합계	1,272	7,668
'24	2024년 워크숍	134	209
	1차 토론회	167	—
	2차 토론회	145	—
	3차 토론회	176	1,800
	4차 토론회	131	2,695
	5차 토론회	133	2,680
	합계	886	7,384

주: 지원예산 외 운영용역 비용으로 '23년, '24년 각각 1억 4,410만원, 1억 9,256만원이 소요됨
 자료: 교육부